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5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년 11월 25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2025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맞춰 동의안의 출자계획(안) 및 각 펀드별 출자액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동의안의 내용 중 2025년 출자계획(안) 1,013억원을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맞춰 602억원으로 수정하고, 각 펀드의 출자액을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주요 내용 중 2025년 출자계획(안)과 펀드별 출자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' 25년 출자계획(안) : 602억원
 - 미래혁신성장 펀드 : 116억원
 - 서울 Vision 2030 펀드 : 477억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동 의 안	수 정 안
2. 주요내용 가. (생략) 나. 출자개요 ◦ (생략) ◦ (생략) ◦ '25년 출자계획(안) : 1,013억원 - 미래혁신성장 펀드 : 187억원 - 서울 Vision 2030 펀드 : 817억원 -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: 9억원	2. 주요내용 가. (생략) 나. 출자개요 ◦ (생략) ◦ (생략) ◦ '25년 출자계획(안) : 602억원 - 미래혁신성장 펀드 : 116억원 - 서울 Vision 2030 펀드 : 477억원 -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: 9억원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번호	2058
------	------

2024.08.12.
기획경제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(인공지능, 로봇, 바이오 등)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·운영 중임
- 나. 이에 '2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(안)에 포함되는 펀드 출자계획(안)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 근거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제1항제1호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제4항
 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제1항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
(기금의 용도) 제2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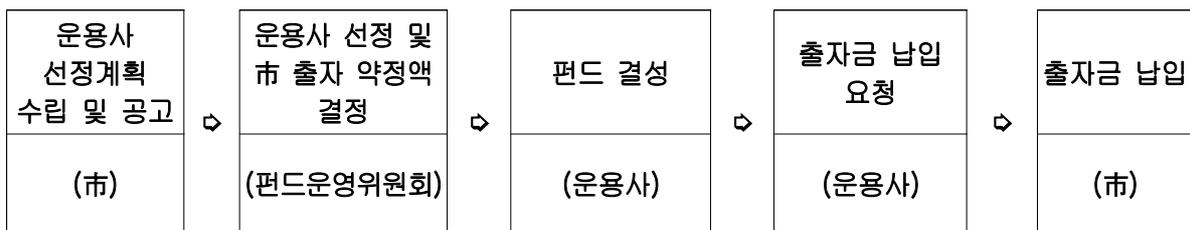
-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
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제1항

나. 출자 개요

○ 출자사업

펀드명	市 출자약정액	조성액	조성기간
미래혁신성장펀드	1,751억원	3조 6,857억원	'19년~'22년
서울 Vision 2030 펀드	3,500억원	5조원(목표)	'23년~'26년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	20억원	200억원	'23년

<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>



*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

→ 펀드 결성

* 투자기간(4년)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→ 회수기간(4년) 동안 출자금 회수

※ 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

- 출자 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- ' 25년 출자계획(안) : 602억원
 - 미래혁신성장 펀드 : 116억원
 - 서울 Vision 2030 펀드 : 477억원
 -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: 9억원
- ※ 기 조성된 펀드의 ' 25년 출자 예상액을 고려하여 산출

다. 출자 필요성

- 총 3.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' 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
 - * 피투자기업 600개사, 매출증대 2조 3,873억원, 고용창출 6,993명(' 23년말 기준)
-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' 24년까지 2.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,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
 - * 연도별 市 출자약정액 : (' 23년) 700억원 (' 24년) 810억원
(' 25년) 890억원 (' 26년) 1,100억원
- '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 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* ' 23년 조성 후 2개사 17억원 투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제1항

제59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-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

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,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기금운용계획(안)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